

第41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0月25日(火) 11時05分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94主要事業豫算執行에 관한報告聽取의件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玄壽漢議員 外 4人 發議)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朴勸先議員 外 4人 發議) 1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9面
4. '94主要事業豫算執行에 관한報告聽取의件(羅在岩議員 外 4人 發議) 21面

(11時05分 開議)

○議長 李斗鶴 議長 동지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귀빈 여러분! 제가 개의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번 뜻밖에도 성수대교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도 고인이 되신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서나마 의원 일동은 간단하게 명복을 빌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一同默念)

(一同着席)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在籍議員 22명 중 出席議員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제2차 本會議 開議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玄壽漢議員 外 4人 發議)

2.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朴勸先議員 外 4人 發議)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運營委員會 金憲中 委員長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金憲中 運營委員長 金憲中입니다. 존경하는 李斗鶴 議長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무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불평하는 일 없고 빠짐없이 의안 처리에 임하여 주셨고 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농촌을 위하여 양수기 보내기 운동에 대한 문제도 의원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비에서 내주셨고 또 신문까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혹은

이 의안을 얘기하기에 앞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처럼 단합된 모습과 희생적인 봉사로서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최근 의장님께서 묵념을 제안해서 우리가 묵념을 드렸습시다라는 뜻하지 않은 성수대교가 어처구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스럽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서울시 과장, 국장급들 이상은 특히 관련된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부 식발하고 자진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 지역도 각 국장님들 특히 21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가운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 이외에 그 많은 잉여금을 어느 때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아내지는 못하고 종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부동이 삼가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연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 내용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각 과나 각 국장끼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고 심지어는 각 동에 하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은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들 자세를 이런 기회에 확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충정어린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의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오늘도 이렇게 성원이 다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 運營委員長으로서의 고마운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4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을 계속해 주신 여러 의원님 모두에게 거듭거듭 마음속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개정조례(안) 두 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

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결산 감사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5인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곁들여 의원님들에게 부탁말씀과 보고말씀을 드리자면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지한 토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예전에 30,000원 선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일괄 처리했음을 보고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역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 조사를 할 때 현행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본회의에서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두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감사위원선임·운영및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10. 1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10월 11일
박권선 의원 외 4인

나. 회부일자: 1994년 10월 12일

다. 상정일자: 제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년 10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권선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의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본 개정(안)은 검사위원의 수는 늘리되, 이에 참여하는 의원수는 1명으로 제한하는 개정 내용으로,

○이는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등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켜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확대하자는 개정 취지로 이해가 되나

○결산행정에 대한 의정권 축소라는 결론도 야기될 소지가 있으나

○조례는 모법 규정 범위내에서 개정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조례는 모법의 개정 내용과 일치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자: 이현구 의원)

○의원들이 검사를 할 경우 관계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하니가 의원의 수를 줄이게 된 것이 아닌가?

(답변자: 박권선 의원)

○입법과정에서 그런 의도가 포함되었는지는 모름.

5. 토론 요지(토론자: 현수한 의원)

○우리 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지만 상위법의 개정으로 그에 따른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 요구(찬성: 5 반대: 1)

6. 수정안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상위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구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반대함.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10. 1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10월 11일
현수한 의원 외 4인

나. 회부일자: 1994년 10월 12일

다. 상정일자: 제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년 10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현수한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할 때에 본회의에서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내용 즉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취지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의회를 대상으로 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우리구로서는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현행 감사 관행의 변동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토론자: 이현구 의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원

안가결을 동의.

6. 수정안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議長 李斗鶴 金憲中 委員長!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決算檢查委員選任運營및實費辨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金成贊議員님 질의하십시오.

○金成贊議員 金成贊議員입니다. 우선 우리運營委員長으로부터 그동안에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3분의 1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이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물론 이번에運營委員會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감사위원선임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 수는 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거기에는 이 3분의 1이라는 것이 타당할런지 모르겠으나 각 자치구에서는 5명이 감사위원이 된다고 했을 때 3분의 1이라고 하면 1.7에 가까이 해당되는 의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조깅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의원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크게 하자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결산검사위원회라고 했을 때는 회계사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해가지고 4인을 모시고 한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부장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인이 모아놓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산검사위원회장이 되어야 될텐데 너무 한 사람이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의부에서는 판사님이 두 분, 세 분 서로 모아가지고 일을 결정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지방자치구의 법에는 안맞지 않겠느냐, 서울시나 도는 10명이니까 우선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도 약 3명이 되니까 충분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물론 저도 잘 봤습니다.

'94년 7월 6일자로 개정된 법 내용을 잘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보류했다가 아직 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더 충분한 검토 끝에 다시 한 번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나마 저의 질의를 이렇게 끝낼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金成贊議員! 수고했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玄孝善議員!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孝善議員 玄孝善議員입니다.運營委員長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공인회계사들이 하루에 3만원 일비를 받고 한달 동안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지금 하루에 20만원 안 주고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여비 규정에 3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일비 3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구를 위해서 힘써줄 분들이 과연 있을런지 모르지만 3만원 받고 여기 나와서 일할 사람 공인회계사들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복식부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의원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한 두어사람쯤 해가지고 일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만원씩이면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예, 玄孝善議員! 수고했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丁昌熙議員!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丁昌熙議員 丁昌熙議員입니다. 금번에 개정된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행령의 제5장 재무에 보면 제46조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일부 생략하고...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1994년 7월 6일 개정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번에 개정된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에 대한 부분

이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아까 한 가지 조례를 만들고 넘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뒤에 후문이 없는 완벽한 조례로서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미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玄孝善議員님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의원, 마땅히 저렴한 실비라도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에서 임하여야 되겠습니까마는 관행적인 실비변상에 의해서는 전문가나 그런 관계자들이 과연 이러한 저렴한 관행상의 지원금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심도있는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 그 부분이 걸리지 않고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斗鶴 丁昌熙議員! 수고했습니다. 그 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委員長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運營委員長!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金憲中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까마는 실비변상 문제하고 기타 단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運營委員會에서 12시가 넘도록 장시간 토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권위를 약간 저하시키는 그런 단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 이렇게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제가 의장님께 들은 바로는 우리 서울시 또 전국의장단회의에서 이 문제가 건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의가 되면 내년 2기를 맞기 전에 수정개정을 할 것이다 하는 아마 내무부에서 권위있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運營委員會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 얘기를 하다가 상위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통과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또 전문위원들 의견도 들었고 이래서 통과

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마 앞으로 운영하는 데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 전역에서도 대두되고 있고 하니까 이대로 개정은 필망정 이대로 계속해서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이걸 통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보하자 이런 의논도 있었어요. 우리가 유보를 해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또 유보보다도 우선 통과를 시켜주고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간절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만부득이 통과를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비 역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3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玄孝善議員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나 이 역시도 이대로 실천은 안될 것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만부득이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은 안 받았어도 그런 선에서 이 상위법이 되었는데 또 우리가 평풍식으로 유보를 시켜서 보내고 이러느니보다 통과를 시켜주면 적절히 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답변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議長 李斗鶴 참고적으로 본 의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運營委員會委員長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전자의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그 결과도 내용도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으로, 원칙적으로는, 이 안전이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면 부결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든지 차후에 여건을 봐서 재발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까마는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 말씀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은 운영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의원들도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현재 상태로써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에 전국의 의장단회의 때 내무부 관계관을 참석시켜서 이 문제를 내무부 자체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

을 했습니다.

그런만큼 금번 저희들 솔직한 말로 저희들 입기 동안에는 개폐문제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2대에 가서는 이 문제가 자연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감사위원 문제가 재검토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현재 한 가지 지나친 말로 형식적인 감이 있습니까다라는 그것을 잘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는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까다라는 방금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별도 조례로 이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 이 문제를 별도로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보충질의가 없겠습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玄孝善議員! 나와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孝善議員 두번째 나와서 미안합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건의를 별도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네 사람을 공인회계사를 데려와야 되는데 한 달이면 90만원 받고 할 사람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제 생각에는 최하 4,500만원은 줘야 됩니다. 한 사람 앞에. 이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내년에 법이 개정될 것이다 해서 예상을 믿고 조례 개정을 여기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잘 아는 분이나 종로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공인회계사들을 네 사람 추천을 해주신다는 조건부라면 동의를 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다라는 만약에 내년에 가서 그게 안되었을 때 의원들이 통과시켜놓고 무슨 소리냐 했을 때는 우리 구의원들 체면 문제도 딸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각자 건어서 모자라는 비용을 보상을 해주기 전에는

보상을 해준다면 또 애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년에 법이 개정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가지고 이것을 유보를 시키지 않고 통과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그외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金憲中 지난번 토의내용에서도 이런 문제를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하달되어 있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로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의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조례로 변경할 수가 없고 역시 이에 따른 수당 역시도 일비와 여비 지급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무시하고 조례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장시간 논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되었다는 것을 거듭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제 말을 다소 이해하시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보충질의 있습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金成贊議員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成贊議員 지금 일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변동이 없다, 불변에 부친다 이러는데 성수대교 붕괴사건도 그 관리소홀로 인해서, 일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방금 우리 玄孝善議員님이 말씀하셨습니다다라는 회계사 1인에 월 400만원은 줘야 한데 상위법에서 3만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불변에 부친다고 말했을 때 이는 결산감사위원을 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술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주고 얼마만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상위법에서 이 결산감사위원을 하지 말라는 거지 3만원에 4명을 정해 두고도 나는 못 하겠다고 하면

한 명도 안 올 것이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최소한 400만원이나 300만원이면 3명 정도를 수용해야 될 텐데 3만원을 준다고 하면 여기 봉사하려고 나오겠습니까?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면 의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법에 모든 균형과 형평에 맞는 것이어야지 어떤 균형에 안 맞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李斗鶴 특별히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田永泰議員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永泰議員 田永泰議員입니다.

상당하게 우리 議員들의 신상에 권리에 관한 이번 조례, 결산검사위원의 새로운 조례에 규정한 우리의 권리와 직결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議員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과거 연도에 대한 예산집행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집행부 자체는 소위 말하면 구청이나 시청 자체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내부부 감사를 통해서 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숫자는 다 와서 일사천리로 천편일률적으로 맞는 것을 검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숫자를 옛날에는 3인의 우리 議員들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5인으로 늘리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우리 議員 숫자는 줄이고 전문, 소위 말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모셔다가 감사를 해라. 그러면 어떤 회계사가 와서 구청 직원 하나하나 오라고 해가지고 과장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잘했고 잘못했고 우리가 얼마나 따졌습니까? 구청 직원들 결산검사 한 달 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죽사발나게 고생하면서 머리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議員들이 상당한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무엇이 잘잘못을 확고부동하게 감사나 감사를 자주 할 수 없으니까 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결산검사라고 우리가 해왔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議員으로 하고 네 사람이나 회계사를 데려다간다고 그러는데 회계사가 어떤 사람이 와서 돈 하루에 3만원씩 받고 국·과장들을 불러다가 그 내용을 숫자는 맞춰보겠조. 숫자는 맞춰보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지도 않고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장부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겠조. 복식부기도 아닌 1년 부기로 쪽 써내려온 그것은 봉사 아니면 들여다 보면 모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내년에 결산검사 시기가 내년 4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부나 상위법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지시대로 내려와서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 뭘 하려고 필요합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원년이 되는 겁니다. 지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종로구면 종로구,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책임을 맡아 가지고 미완성된 법을 구태여 정치 일번지, 260개 지방자치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오자마자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金成贊議員님이 얘기했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이 법이 주민한테 우리 구민한테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킴으로 해서 해를 준다면 당장 해야 되겠조. 악법도 법이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서 전국 275개의 소위 말하면 광역이나 기초단계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상위법이 너무 잘못되었다. 이것이 여론화 되어서 소위 내부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 시정되는 이러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야만이 과연 민의로 당선된 우리의 의무이고 권한이지 않겠느냐. 또 주민과 구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상위법이 필요합니까? 국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해서 우리가 일부러 나온 사람이 상위법이 무슨 議員들 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시려고 사표 내려고 했습

니까? 상위법도 상위법다워야 하고 또 상위법이 아까 말한 악법이지만 그것이 안돼도 당장 구민한테 지장을 주지 않고 내년 4월달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運營委員會에서는 그것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전체 議員들이 심사숙고한 가운데 이것은 꼭 유보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議員들의 조례개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노파심으로 運營委員님들은 듣지 마시고 제 말에 공감이 되면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건의해서 여러 가지를 다 봐가지고 훌륭한 조례개정이고 우리 종로구가 그것을 제일 먼저 건의하는 어떤 계기도 마련될 수 있느냐까 그런 식으로 좀 대처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수고하셨습니다.

田永泰議員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질의보다도 토론시간에 검토하기로 이렇게 하고 좀 전에 질의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金憲中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문제는 서로 이렇게 진지한 토의 끝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에서 조례개정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실비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여러 議員님들 아시다시피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그냥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이 얼마를 받든지 종전의 이것을 하든 간에 노파심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 조례개정안이 뒤따라서 상정이 될 것으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실비를 얼마를 줘라 얼마를 주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말씀하실 것이 못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구청에서 개정안이 들어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성급히 이것을 왜 안하느냐 하느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행정하고는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부득이 이번

에 조례를 가결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미약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참 저도 몰랐는데 공인회계사들이 한 4, 5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개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 議員님들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議員의 권리르 축소시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또 행정 당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玄孝善議員 議席에서 - 여러 번씩 나가서 하기가 그런데 여기에 서서 해도 되겠습니까?)

○議長 李斗鶴 그러세요.

(○玄孝善議員 議席에서 - 양해를 하시고 아까 運營委員長님의 말씀에 일비는 3만원으로 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運營委員長 金憲中 아니요. 현행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말은 그 말이에요.

현행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비니 수당이니 하는 조례안은 상정이 안 되었으니까 엇그제 토론을 할 때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玄孝善議員 議席에서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공인회계사가 몇 명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결산검사 할 필요가 있습니까?)

○運營委員長 金憲中 각 구청에 있는데 글썄 우리가 꼬집어서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이것은 구청직원이라 안된다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는 아니지만 서울시 전체에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 공무원을 이쪽으로 보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딴 뜻으로 받아들일는지 몰라도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할 문제겠지만 제 의견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정된 의견이 運營委員長으로서 가결 통과를 시켜서 상정

을 했으니까 아까 다른 議員님 말씀과 같이 이것을 증론을 모아서 토론으로 넘겨서 이렇게 해서 부결시키는 것은 議員님들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니 양해를 해주십시오.

○議長 李斗鶴 여러 議員님들의 질의와 답변 또는 상당히 진지하고 심도 깊은 점진적인 질의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우리 區議員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이 참여한다. 이것이 첫째 주요한 골자이고 여러 議員님들께서 실비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議員 수당과 여비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한 질문이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실비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재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만큼 솔직한 말씀으로 運營委員長과 運營委員들이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전체로 현재 내용을 보면 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알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지 않고 1단계 주요한 골자는 3인부터 5인으로 하되,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議員이 3분의 1이 참여한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만약 오늘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다음에 내년 4월 안에 똑같은 내용의 발의가 다시 발생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문제가 주요한 골자니까 실비관계 문제는 차후에 조례개정 때 검토하기로 하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으냐. 그것을 좀 알고서 지나가는 것이 좋으냐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해 주시고 일단 질의관계는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芮相浩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芮相浩議員 芮相浩議員입니다.

이번 종로구 결산검사 위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議員님들께서 열띤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동감된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요 골자 일비문제는 다음으로 미룬다 하더라도 지금 委員 수를 5인으로 했는데 결국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한 사람밖에 안된다 이렇게 우리 議員들의 활동 또는 권위 범위를 축소시켜왔다. 이것이 주요 골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議長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인 의장단 회의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이 법을 고쳐달라는 건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들은 믿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건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일단 유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여론화하고, 상위법이 우리 의회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론화하고 또 이것을 議員들이 실질적으로 내무부나 관계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기관에 건의하는 뜻으로써 일단 유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 4월에 할 것이니까 그 안에 다른 구 우리 일치단결해서 다른 구에서도 이러한 건의가 나오고 이러한 조치가 되게 이것 해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자.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우리 議員들의 권리보호와 그 다음에 참다운 검사를 위해서 지금 案대로 한다고 하면 공인회계사 4명이 검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 임명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하나마나고 議會에서 선정하는 분으로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일비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하튼 유보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芮相浩議員! 수고했습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玄壽漢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議員 玄壽漢議員입니다.

運營委員長 幹事로서 이 안건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몇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서

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감사위원 3분의 1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조례가 전문지식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여러 議員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도로 교육을 받은 능력과 경륜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 3인이 전부 區議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개정되게 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간에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94년 7월 6일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가 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안 해놓으면 지금 다른 議員님이 4월달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6, 7, 8월달에 결산검사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달에 지방자치제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안 해놓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구 먼저 조례는 상위법 때문에 사장이 돼서 효력 발생을 못 합니다. 그럴 때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출마해서 당선될 분도 있겠지만 물러날 사람들 그냥 이것을 놔두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 3분의 1에 대해 제가 강력하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회에서 사사오입 파동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오입이 안 되고 해서 그 안에 運營委員長님도 말씀하셨고 議長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의장단회의에서 건의가 올라갔고 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종로구 자체에서 조례가 없다는 것이 조금은 뭐할 것 같아서 우리 감론을박 굉장히 한 가운데 아까 만장일치로 하셨다고 했지만 이것이 찬성 5, 반대 1로 할 수 없이 표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芮相浩 副議長님께서 보류를 합시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반대하고 토론장에서 이것만은 우리 議會 위상이 위축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우리 議員들의 권한을 위상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 조례를 그냥 없이 만들어 놓고 다음 선거에 임하기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해서 가지고 제 입장에서 원안가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玄壽漢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討論하실 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李憲九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지한 안건이니까 토론을 모두 받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 표결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九議員 李憲九議員입니다.

본 議員이 運營委員會에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3분의 1이라는데 첫째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질의도 했고 또 실비변상에 대한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검사는 사실상은 전년도에 모든 사업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議員들이 우리 종로뿐이 아니고 거의 전국에서 사무감사 비슷하게 관계관을 불러 가지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권한 위축을 자초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해서 1.67이 나와서 두 명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사람은 쪼갤 수 없기 때문에 議員은 한 사람으로 지칭해서 조례개정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조례를 처음에 내왔을 때 아까 丁昌熙議員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실비변상 조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결산검사 선임과 운영에 대한 조례지 변상조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玄壽漢議員님께서 선거 등 모든 것을 얘기했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놔두면 전 조례는 사장돼서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보류는 할 수 있습

니다마는 또 내년도 선거도 임박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만약 번상비에 대해서 얘기가 된다면 이 조례를 별도로 주무부서에서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도 본議員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議員님들이 잘 좀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꼭 공인회계사만이 결산검사에 선임된다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서울시내 또는 전국의 공무원 중에서 회계에 능한 공무원이 퇴직한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꼭 결산검사에 공인회계사만이 필요하다는 얘기만도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議員님들이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金成贊議員님 또는 玄孝善議員님, 丁昌熙議員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생각도 해보고 해서 5대 1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고 별도로 실비변상 조례는 나중에 한 번 다루기로 하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정식으로 제안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수고했습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鄭命浩議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鄭命浩議員 鄭命浩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運營委員會에서 감론을박 아주 진지하게 토의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그야말로 진지하게 토론이 되는 과정 속에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린다면 芮相浩議員께서 부결동의안을 냈습니까? 불분명합니다. 유보가 부결이죠. 그 다음에 玄壽漢議員께서 원안통과 동의안을 하셨는데 그 점을 발언대에서 분명히 짚어줘야 다음에 제청, 삼청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남습니다. 그 이외에 본議員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이것은 지방자치 스스로를 말할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地方議員이 그야말로 감사도 하고 검사도 하는 그러한 범위를 권한을 축소시키는, 地方議會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결과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玄壽漢議員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선거가 되기

전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 말에도 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현행 조례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잘못된 조례안이 결국은 2기 지방의원이 봤을 때 저희들 먼저 간 1기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도 잘 되어 있는 조례안 우리가 충분히 권한 위임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행정부에 맡기는 그러한 잘못된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현행 조례안 가지고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는 定期會議에서도 지금 결산검사위원회가 지금까지 위임 받은 업무를 또 보고해야 되고 통과를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종로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의회가 한 번쯤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의장단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여론이 전국에서도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상위법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내년도 선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물도 없을 뿐더러 또 잘못된 조례안을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전례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습니다. 2기 지방의회가 출범되기 전이라도 새로이 조례안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개정할 수도 있고 해서 오늘은 본議員이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芮相浩議員이 발의한 부결안에 찬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議長 李斗鶴 네. 金成贊議員! 토론하세요.

○金成贊議員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우리 運營委員長하고 幹事님 그리고 李憲九議員께서 심사 과정에서 열을 내고 이걸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토의 석상에서, 심의과정에서 했다고 하니 제가 여기 나와서 어떤 말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玄壽漢議員님께서 명년 選舉를 지금 鄭命浩議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종로구청에는 행정직에서 결산검사 의

원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재심청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결된 사항을 재심청구할 때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오히려議長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의장단회의에 나가서 우리 종로구는 否決됐다, 유보했다 앞서가는 우리 종로구청이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심정이 괴로웠을 겁니다. 운영위원님들도 상위법이 '94. 7. 6자로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심정도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하면서 방금 우리 芮相浩 副議長님께서 그 토의 내용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구청에서 제안된 건이 아니고 우리 의원 발의입니다.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인데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이걸 부결시킨 후에 상부기관에 건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재심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고 의원 발의는 곤란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네. 千相旭議員! 토론하세요.

○千相旭議員 네. 千相旭議員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도 우리 나라의 법 운영에 대해서 신랄하게 흥분한 적이 있습니다. 법은 國會에서 만드는 것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결과가 좌우되는데 우리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악법도 법이다,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도 우리가 선출한 대의기구인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조금 國民된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법이 법에 의해서 의원 발의로 제안한 조례가 운영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반대 1, 찬성 5표로 可決이 됐는데 그것을 本會議에서 우리 의원들이 부결시킨다고 볼 때 과연 그것이 잘한 것이냐 하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모법에 의한 조례가 다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또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꼭 5명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3내지 5명, 3분의 1이란 숫자는 의원 한 분이고 전문가 한 분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란 것이 꼭 공인회계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희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검사하는 분 2명을 선임하고 의원 한 분이 참여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느냐 하니까 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원 6명 있는 데도 있다 그렇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6명 있는 의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7명, 8명 심지어 서울같은 데는 지방의회도 5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6명 내지 50명의 다양한 모양을 갖춘 의회들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고충이 많았다. 6명의 의원이 있는데 3명이 한 달 동안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저희 의회만 하더라도 초대 때 결산검사보고서하고 2대, 3대 때가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 기준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간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어떠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되 단 결산검사 委員長이 議員이 되기 때문에 위원을 잘 감독을 하고 관장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항을 받아서 더 연구해서 개정할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참 한심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지금 토의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법의 운영을 잘하면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운영위원회 金憲中 委員長님 이하 6분의 委員님들께서 노심초사하신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높이 평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 앞서 토론하셨던 玄壽漢議員님과 李憲九議員님의 토론에, 원안 가결해달라는 토론에 제가 부재자이기 때문에 찬성이 아니고 재청 발언을 하는 절로 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議長!」하는 이 있음)

○議長 李斗鶴 네. 朴禹信議員! 토론하세요.

○朴禹信議員 朴禹信議員입니다. 지난번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유독 저 혼자 반대한 사람으로서 토론하겠습니다. 議員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 발의입니다. 의원이 발의해서 폐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조례제정권을 가졌지 조례를 마음대로 개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맨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면 그냥 거수하는 지방의회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라 하더라도 이는 반대의사를 하는 데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자 또 지금 이것이 운영의 묘가 있으면 되겠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산검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만 한 가지라도 잘못 지출한 게 있으면 그걸 잡아서 구민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은 응징도 하고 혼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 지방 기초의원의 권리요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나와서 그저 제정하고 또 의원 발의도 몇조에 의해서 저희가 발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점을 내심 발의한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관에 의한, 행정부에 의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기초의회가 돼야 되는데 이걸 정직한 그러한 의정활동을 통해서만 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무조건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을 저희가 그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느냐, 좀 유보를 해서 다음에 구의원이 다시 발의를 하더라도 크게 위배되는 사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추후로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조례는 다음으로 미뤄서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議長 李斗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鍾

植議員! 나오셔서 토론하세요.

○朴鍾植議員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지하게 질의하시고 토론하시는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번 초대 재직 당시에는 어디까지나 배우는 자세로 되도록이면 발언을 안 하고 경청하는 것으로 일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상위법에 따라서만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면 지금 우리 議員님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앵무새같은 토론이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몇개월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런 앵무새같은 토론도 필요없고 상위법 그대로, 원안 그대로 해야 된다면 이런 진지한 토론이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정한 민주주의나 진정한 지방화시대가 된다면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고 그 결과의 취합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원들에게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라면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고 여야를 막론하고 상부에서, 국회에서 하기 싫은 지방자치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지방 의원들 가슴에 뻥치 달게 해놓고 또 뻥치가 국회의원들하고 똑같다고 해가지고 바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인의 3분의 1이란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 반으로 쪼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인까지 할 수 있다면 3분의 1 이내로는 말이 안 되고 2인으로 우리가 잘라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 역시 처음 의회에 들어왔는데 제가 감사위원의 한 사람이라면 물론 아는 것도 없지만 외롭습니다. 솔직히 저 말고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각 분야에서 자기 생업에 열중해왔지 감사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혼자서는 지적사항이 눈에 띈다고 하더라도 외롭기 때문에 함부로 지적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두 사람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이 잘못됐다면 대한민국 정치 일번지 종로에서부터 강력히 지적해 가지고 상위법을 고칠 수 있도록 투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

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田永泰議員, 芮相浩議員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議長 李斗鶴 네. 玄孝善議員! 토론하세요.

○玄孝善議員 우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그 외 운영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노심초사한 끝에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이거 우리가 3년 했어요. 3년 했는데 잘못 없었어요. 중앙정부에서 하기 싫은 지방자치 하다 보니까 구의회에서 자꾸 질책만 하니까 공무원들이 싫어하지요. 그러니까 3인 했다가 좀더 늘려주세요 하니까 늘려주는 대신 엿이나 먹어라 하고 줄인 거예요. 다른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회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 일번지 종로구의회에서도 통과시켰는데 너희들도 통과시켜라, 3년동안 우리 3인의 구의원으로서 결산검사 잘 해왔어요. 그 하던 것을 늘려준다고 해놓고 3분의 1로 잘라낼 때 우리가 통과를 했으면 하니까 2기 의원들이 나와서 그 1기 의원들 참 잘했어. 받은 밥상도 발로 차는 그런 1기 의원들이었구나 할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결이 된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급하면 재심이 올라옵니다.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운영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한 것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또 동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반대 의견을 말하는 저도 사실 괴롭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이 양해하셔서 이번 문제는 否決을 시켜서 금년에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재심이 올라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斗鶴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취급하는 것은 첫째,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들 모두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대표하고 의원 발의 서명하는 분은 원칙적으로는 반

대 의사를 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의원 발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의원들의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또 운영위원회에 속하는 분들은 위원장부터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혹시나 의도한 것과 방향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섭섭한 감상을 갖지 말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발의됐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부득이 해서 모법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실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우리가 대표 중의 대표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게 했는데 부결이 됐다, 어떻게 됐다 하는 말이 혹시 있더라도 이것은 불미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봐서 운영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토론에 대해서 집약을 해보니까 芮相浩議員이 토론한 솔직한 말씀을 부결 후 건의를 해서 그 건의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의원 재발의로 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에 찬동이 몇분 계셨고, 그 다음 玄壽漢議員은 모법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모법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더라도 그것은 안되니까 이러한 것은 금번 조례 뿐만 아니라 지나온 4년여 동안 그 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억제되고 어용되고 우리가 생활해온 것을 상기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좀...

그리고 일단 이 문제는 현실에 입각해서 원안가결시키고 차후적으로 우리가 금번에 안 되면 이 기회를 맞아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하는 원안가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찬동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표결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의원 자세하의 마음으로 표결에 임한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토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네, 발의 의원이신 朴勸先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朴勸先議員 朴勸先議員입니다. 나오지 않고, 말씀을 안 드리고 발의자로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찬반이 엇갈리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91년도 4월 15일 초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그로부터 15일 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초대 때 우리 千相旭議員님, 芮相浩議員님의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그걸 해보니까 이 건 복수부기도 아니고 단수부기도 아니고 복합부기예요. 또 일반 기업경영에 나오는 회계원리에 맞지도 않아요. 또 용어 자체가 터무니없이 틀려요. 회계학에서 나오는 용어와 여기서 나오는 용어는 그 자체가 판이하게 틀려요. 그래서 굉장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대 나중에는 전문인을 초빙해서 협조를 받아 가면서 한달 동안 우리 세 의원이 해가지고 아마 우리 종로구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서울시 전 구에 아마 그때 모범이 되지 않았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이 전문인과 말하기를 이게 결산검사나 결산감사나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파고 들어가면 결산검사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결산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와 감사의 중간에서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우리가 심도있게 해두느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마 3인에서 5인으로 한다는 게 환영을 받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대표위원을 구의원이 한다면 이게 달라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 같은데 단 이번 건 통과를 시켜주시고 구의원을 2명으로 한다 이것만 하나 개정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반하고도 7일 동안 기초자치단체의 구의원을 하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바뀔게 있나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朴鍾植議員님!

왜 지방자치의원이 존재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원이 돼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부득이한 일입니다마는 5명으로 하되...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 인신공격하지 말고 하세요. 누가 결산검사위원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인신공격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러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고충 또 시의 모범에 의해서 조례가 바뀔 적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몇개월 후에 또 다시 한다 해도 이게 또 상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의자로서는...

(○金成贊議員 議席에서 -議長님! 이게 토론입니까?議長님이 회의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지...)

끝내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머리 숙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議員님들이 깊이 양해하셔서 통과되는 쪽으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진심된 부탁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李斗鶴 朴勸先議員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발의 책임자로서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토론이 끝날 무렵에 앞으로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李炯述議員 議席에서 -議長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손도손하게 얘기를 하니까 순서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무질서한 진행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李炯述議員 답변을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토론 질의 같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 議員님들이 나오셔서 지금 3인 이상 5인 이하라고 했는데 한결 같이 의원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오셔서가지고 의원들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숫자를 국민학교 학생들이

두들겨 보면 1.666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어떻게 한 사람으로 못을 박는 근원이 어디 있는지 의원들이 국민학교 다닌 의원들 같으면 숫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둘로 가야 되는지 하나로 가야 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표결 이전에 그것을 먼저 물어보아야 되지, 어떻게 의원 한 사람으로 얘기한 근원을 여기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오입 헌법파동때도 사사오입하면 숫자 많은 쪽으로 갔다 이겁니다. 헌법을 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議長 李斗鶴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지금 새삼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표결에 앞서 동료의원들은 보니까 표결할 것 같으면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 나갑시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누구를 막론하고 중요한 안전이니까 내가 운영위원회 속하니까 이렇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방망이 쳐놓고 돌아서서는 반대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고 이것을 운영위원이 아니니까 이렇데 이런 것을 우리는 지양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안전을 순수한 자체에서 운영위원회에 속한 분이나 또 운영위원회에서 방망이 치신 분이나 그외 분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 의원들의 이러한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뭔가 한번 꿈틀거리는 것을 보이자 하는 이러한 것이 나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모범이 한 바에 따라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별 수 있느냐 지금까지 3년 여를 해봤자 그것은 여러 가지 투쟁에 의해서 참으로 여야 국회의원들 또는 주무관청에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몇가지 고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해왔고 또 우리는 해외 연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구라파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방화시대가 정착될 때까지 상당한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고 일본정부를 가서 보더라도 지방 법 조례가 3백몇십조로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느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너무

성급한 감상을 초월해서 차차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 이런 여러가지 장단점,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검토도 잘해서 마음을 가라앉힌 가운데 순수한 입장에서 임해줄 수 있는 의원 자세를 가져달라 하는 것을 새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한두분 정도 이야기를 하세요.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玄孝善議員!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서 말씀하세요.

○玄孝善議員 이것이 오늘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참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위원 여러분들 마음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거수로 하게 되면 이상해집니다. 비밀투표로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議長 李斗鶴 예. 金憲中議員! 말씀하십시오.

○金憲中議員 정말 좋은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관습에 의해서 합시다.

우리끼리 이것을 뭐 부결시키든 가결시키든 정말 여기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핏대를 올리고 하는데 자제 좀 해주세요. 나 운영위원장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제 좀 해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의 관습에 의해서 해야지 무슨 여기서 비밀투표니 뭐니 하겠습니까? 거수로 해서 끝내고 서로 웃고 맙시다.

○議長 李斗鶴 예. 알겠습니다.議長도 이럴 때 권한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권한 좀 주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議長에게 권한을 전부 위임했습니다. 지금 모두 玄孝善議員이나 金憲中議員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표결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표결대상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議員 전체의 궁금한

점의 표출되는 사항을 되든지 안되든지 이것을 한번 이룰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저 자신도 그런 감을 느끼는 議員의 한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나중에 가서 뻔할 뻔자입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 委員長을 비롯해서 심의한 위원들 또 발의한, 부득이해서 당신이 발의 좀 하시오 하는 요청에 의해서 朴勸先議員이 대표가 되어서 몇명이 서명 날인이 된 사실 이것은 발의하고 싶어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사무국의 부탁에 의해서 발의를 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뻔할 뻔자인데 빨리 방망이 쳐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여러가지 議員들의 의견을 가만히 대충 들으니까 일단 우리가 부결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부결해서.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金憲中議員! 말씀하십시오.

○金憲中議員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문제나 개인신상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볼 때는 議長님이 표결을 해야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부를 막론하고 가나 부나 표결을 해야 원칙이지 議長님이 이렇게 하자 하면 이 의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기초의회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회는 표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드렸다고 나나 부결이 되어도 좋고 가결이 되어도 좋은 사람이고 솔직히 제 심정을 아는지 몰라도 최초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 의사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議長님 권한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議員들 사소한 권리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표결을 해야 議員 위상이 확립되는 것이고 또 의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2기, 3기, 4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이런 속기록을 남겨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표결을 주장하고 만일 표결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 자격을 나는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 표결을 주장합니다.

○議長 李斗鶴 알겠습니다. 제 말씀을 취소하겠습니다. 원칙에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회의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진행 발언 그만두시고, 삼가해 주시고 운영위원장의 권위도 세워주어야 되니까 議長의 말은 취소하고 표결하도록 합시다. 저는 순수하게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제가 회의 규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어떠한 감상의 내포를 운운하는 안전이 아니라 이것을 첫째 의원들이 알아주세요. 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발의가 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절대 소홀하게 하든지 비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부터 돌아서서 나한테 이 문제는 사실 따지고 가야 되겠다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부득이 모범이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방망이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장으로서 권한 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우리 전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의원들에 관한 문제 특히 종로구가 정치일번지로서의 의회로서의 뻔한 것이지만 이것을 한번 따지고 넘어가는 것도 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절대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감정을 앞세우지 마세요. 운영위원회의 권위도 너무 소홀하게 대한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비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참 진지하게 토의한 것도 다 알고 운영위원들도 여기 계시고 찬성발언하신 분도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모범에 정해진 바다 그러지만 3분의 2도 아니고 3분의 1이라는 것은 너무하다 하는 것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의하는 것도 최소한도 3분의 2는 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까 구청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의장단회의에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위원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범에 정한 바니까 할 수 없이 방망이 치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부디 자숙 좀 해주세요. 왜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피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문제 공동에 관한 문제를 표결해서 누가 반대했다 누가 찬성했다 또 누가 어떻게 저렇다 이것은 이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金憲中 委員長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원안가결을 원하는 의원들도 기점이 뭐냐하는 것은 잘 아실테니까 이해를 해주셔서 순수한 의원의 자세 우리가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하는 의원이 되어야 되겠느냐,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는 자세를 가지는 지방화 시대의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에 의해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결을 원하십니까? 중론에 의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회의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丁昌熙議員! 말씀하십시오.

○丁昌熙議員 표결에 앞서서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0분 전 1시니까 식사를 한 후에 재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議長 李斗鶴 저도 그것이 좋겠는데 우리 기분을 좀 가라앉히고 점심하시고 다른 안건도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첫째 이 안건은 제차 말씀드리지만 기분에 관한 문제니까 첫째 자체 우리 의원들의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화합이 잘되고 있는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안되니까 그러면 2시까지 停會를 선포합니다.

(12時50分 會議中止)

(14時18分 繼續開議)

○議長 李斗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는 순서인데 표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어느 議員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金憲中議員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는데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서는 비밀투표로 표결을 결정지었으면 합니다. 가부 이런 논쟁도 있었고 또 상호간에 우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각자 소신껏 이렇게 자기들을 반영하기 위

해서라도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議長 李斗鶴 표결방법을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金憲中議員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의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표결은 비밀투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결산감사위원선임·운영 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먼저 중로구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편의상 감표위원은議長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역시 지역순서에 따라서 田永泰議員과 金憲中議員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의 없으면 田永泰議員과 金憲中議員 2명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합니다. 두 분의 議員께서는 앞에 나와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名牌函 및 投票函 確因)

그리고 투표에 앞서議長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 議員들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오전에 여러 가지 진지한 토의가 있는 것과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議員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중로구의회 議員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의원들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례인 만큼 신중한 생각 끝에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투표결과에 대해서 재론할 것도 없이 일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투표결과에 승복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안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議案係長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案係長 林星圭 議案係長 林星圭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의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는 議員은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는 議員은 엑스포를 표기하신 다음 정면에 마련되어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나중에 투표하시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앞줄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은 편의상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원안 찬성은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분은 엑스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4時 25分 投票 開始)

(議案係長 議員 姓名 呼名)

(14時 32分 投票 終了)

(名牌函 및 投票函 閉函)

○議長 李斗鶴 투표가 전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名牌函 開函)

(名牌數 點檢)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投票函 開函)

(投票數 點檢)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7표, 반대하신 분이 11표, 棄權 1표로서 반대하신 분이 11표로서 과반수 이상 차이함으로써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재삼 말씀드릴 것은 여러 議員들이 정성어린 그런 진의에 입각해서 본 의회사무국의 專門委員 2명과 관계 係長 또는 운영위원 전원의 진지한 내용 검토를 한 그것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관계기관과 관계당국에 건의를 해서

그 건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議員 재발의에 의해 이 문제를 재론할까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지하게 심의 검토해주신 여러 議員들에 대하여 재삼 감사드리면서 이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鍾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4時39分)

○議長 李斗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市民行政委員會 羅在岩委員長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羅在岩 시민행정위원장 羅在岩입니다.

존경하는 李斗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산의 단풍이 곱게 물든 결실의 계절 10월에 제41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법 시행령 제23조가 '94.5.23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목적)중

측량법 시행령 제23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丁昌熙 간사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 및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10.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4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
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4년 10월 5일

다. 상정일자: 제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4.
10.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홍기화)

가. 제안이유

○법령이 개정되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측량법 시행령 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목적) 본문중 적용조문을 자구수정코자 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지명 제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측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에서는 동, 리 이상 지명에 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이하 자연부락 등 지명은 측량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측량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 내

용중 모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자: 정창희 위원, 박우신 위원)

○동사무소 행정구역도 지명위원회에서 조정하는가?

○지명위원회 위원은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장기거주자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답변자: 총무과장 배진섭)

○동구역의 조정은 하지 않고 소규모 지명만 조정함.

○장기거주자 및 구의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명 등을 정하도록 하겠음.

5. 토론 요지(토론자: 김현중 위원, 정창희 위원, 정종구 위원)

○측량법의 개정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함.

○위원회 위원을 그 지역의 전통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 반드시 그 지역의 유래와 역사를 아는 것은 아니므로, 역사를 잘 아는 인사가 위원이 되어야 함.

6. 수정안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議長 李斗鶴 羅在岩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議員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主要事業豫算執行에관한報告聽取의件 (羅在岩議員 外 4人 發議)

(14時43分)

○議長 李斗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市民行政委員會 羅在岩 委員長께서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羅在岩 시민행정위원장 羅在岩입니다.

'94년도 주요예산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예산사업에 대하여 공사진도 및 예산집행사항을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여러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오랜시간 회의 끝에, 동청사 신축, 구민회관 건립 등 주민들의 관심사업의 부진, 노인정, 어린이집 등 구립시설물의 신축, 관리를 위하여 영선제의 필요성 등 많은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청취의 건을 통하여 곧 있을 정기회때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강도있는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예산사업 집행에 관한 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羅在岩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都市建設委員會 沈載得 委員長께서 나오셔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長 沈載得 都市建設委員長 沈載得입니다. 존경하는 李斗鶴 議長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만산의 단풍이 행락객을 유혹하는 가을에 제41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심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의

한 안건은 저의 요구로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및 진도 현황에 대하여 市民行政委員長이신 羅在岩議員의 4인이 발의한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주요사업 진행현황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받은 바, 도로 개설이 사업 등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진도가 늦거나 착공이 안된 점, 많은 토목공사가 발주가 늦어져 동절기에 시행됨으로 콘크리트 양생 등의 문제가 있는 점 등 많은 주요사업이 시간을 끌다가 하반기가 되어서야 공사 시작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 청취의 건을 통하여 향후 있을 정기회 때 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 시민행정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우리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요사업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沈載得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전 회의진행 중에 의원님들의 발의에 대해서 속기상으로 검토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제셨습니다. 혹시나 이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하지 않기로 했다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4時47分 散會)

○出席議員 20人

李斗鶴	芮相浩	李憲九
鄭命浩	千相旭	玄壽漢
玄孝善	沈載得	鄭鍾九
李炯述	洪承台	羅在岩
丁昌熙	朴鍾植	朴禹信
金成贊	金憲中	朴勸先
田永泰	孫光一	

